

한-EU FTA 활용 매뉴얼

< 국제섬유신문 2011. 5.10 >

벌써부터 한-EU FTA 효과

국회 비준안 통과 전부터 중국갔던 오더 회귀, 관세철폐 섬유수출 무역흑자 연 8천만불 추가

우여곡절 끝에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연간 섬유수출입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약 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EU FTA가 정식 발효되면 기본관세 4~13%가 철폐돼 상대적으로 임금인상과 위안화절상등으로 경쟁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중국산 섬유류보다 한국산 섬유류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EU섬유류 수출전문기업들이 벌써부터 중국으로 갔던 오더 회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섬유산업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EU간 섬유류 교역은 우리나라의 대EU수출이 11억 5000만 달러, EU로부터 수입이 10억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무역수지 흑자 1억 4000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산 섬유수출은 2억 2000만 달러 규모가 늘어나고 EU산 섬유수입은 1억 4000만 달러가 늘어나 무역수지 8000만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특히 한국산 합섬직물 및 교직물, 니트직물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섬유원료와 사류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 EU산은 의류제품수입이 전체의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모직물도 17%정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가격경쟁력 때문에 수입선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환했던 EU 직물류바이어들은 이번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입선을 한국으로 대거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EU 직물류 수출업체들은 벌써부터 바이어들의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 2011. 5.26 >

까다로운 FTA 원산지기준... "원산지판정 어려워"

중소영세업체, FTA 준비할 인력·자금 부족-정부지원 '절실'

섬유·의류업체들이 까다로운 FTA 원산지결정기준 등으로 인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한-EU FTA 특혜를 구경만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섬유업계 특성상 중소기업체가 많아 FTA 준비를 위해 투입할 자체 인력·자금 또한 턱없이 부족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6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EU·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섬유·의류업계의 FTA 준비상황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잠정 발효될 예정인 한-EU FTA의 경우 순모직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섬유·의류제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우리 기업들이 관세특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EU·미국 업체들의 배만 불러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섬유·의류업체들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는 까다로운 섬유관련 원산지결정기준 때문.

한·미 FTA의 경우 섬유·의류품목에 대해 실부터 재단·재봉 등 대부분의 공정이 자국에서 이뤄져야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사기준(얀포워드, Yarn-forward)으로 원산지를 결정하고 있어, 수입원사를 주로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의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비해 한·EU FTA는 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직물기준(패브릭 포워드, Fabric Forward)을 적용하고 있어 관세혜택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직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의류업체들의 경우 원산지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향세를 보인 섬유·의류산업 특성상 중소기업체들이 많은 점도 FTA 관세혜택 활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품 생산에도 바쁜 중소기업체들에게는 FTA 준비를 위해 투입할 여유 인력 및 자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EU와 미국에 수출한 섬유·의류제품은 각각 11억3300만 달러와 11억8200만 달러이며, 對EU·미국 전체 수출액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수출품목 중 하나로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한·EU FTA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세청을 중심으로 섬유·의류업체들을 위한 FTA 지원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른 품목보다 까다로운 섬유·의류제품을 위한 별도의 원산지판정시스템(FTA-PASS)을 개발, 무료 배포를 시작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 삼성동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수출업체 관계자들에게 원산지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고, 향후 섬유·의류업체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FTA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섬유·의류제품 원산지관리시스템 홍보·배포를 확대하고, 시스템 편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영세수출업체들이 어려움 없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FTA 활용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EU FTA 이후 기업의 수출 업무 진행요령 및 유의사항

□ 수출업체

○ (1단계) 협정 발효국 및 관세혜택 확인

- 수출품목의 품목번호 및 FTA별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를 활용할 경우의 혜택을 분석

• KITA무역연구소 (<http://tri.kita.net>) • FTA포탈 (<http://fta.kita.net>)

- 한-EU FTA 체결에 따라 관세 혜택을 수혜할 수출유망상품을 분석

1. 독일 (위성방송수신기, **합성폴리에스테르섬유**, 산업용장갑, **플랜지**, **플라스틱필름**)
2. 영국 (CCTV카메라, 위성방송수신기, 동케이블, 해상중력터빈, 커튼/블라인드)
3. 프랑스 (스마트폰케이스, LED조명, **산업용장갑**, **안경테**, **편직물**)
4. 스페인 (**합성폴리에스테르섬유**, PET, 광커넥터, 냉동조개, 가정용중력발전기)
5. 네덜란드 (디지털도어락, LED비상등, 콘택트렌즈, **여성의류**, **리튬-이온배터리**)
6. 이탈리아 (LED조명, **편직물**, **합성폴리에스테르섬유**, **리튬-이온배터리**, 선박용엔진)
7. 오스트리아 (차량용연속전지, 위성방송수신기, 차량용타이어, 스키일렛, 자전거)
8. 스웨덴 (LED조명, 피부미용기기, 의료보호대, 타포린, 금고)
9. 덴마크 (중력발전기용플랜지, 중력발전기용플러베어링, 중력발전기용기어박스, 에너지절약형전구, 자전거조명등)
10. 핀란드 (에너지절약형전구, 중력발전기용플랜지, 타포린)
11. 그리스 (자동차브레이크패드, 자동차용배터리, 적외선디지털카메라, DVR, 저밀도폴리에틸렌)
12. 폴란드 (넷북, CCTV카메라, 알루미늄휠, LED조명, LPG자동차연료장치)
13. 체코 (LED조명, ABS, 자동차용타이어, 나일론, **폴리에스터원단**, **폴리프로필렌테이프**)
14. 헝가리 (위성방송수신기, 기타유리저장용기, 절전형전구, 자전거, **산업용장갑**)
15. 불가리아 (태양광모듈, 폴리수지, 폴리에스테르섬유, 버스/화물차용타이어)
16. 루마니아 (태양광집열판, 수압/기압밸브, 라이데이터, **폴리에스테르섬유**, 디지털도어락)

○ (2단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

- 수작업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구입 재료의 원산지는 공급자 발급 원산지 확인서로 확인함으로써 입증 부담을 완화
- '원산지 인증 수출자¹⁾'로 지정되면 간편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한-EU FTA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C/O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

* 지난 5월 4일 한-EU FTA에 대한 국회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EU FTA 가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됩니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건당 수출금액이 6,000 유로 이상일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않으면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개요와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발효 전에 반드시 지정받아 한-EU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수출자 종류 및 인증기관

구 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기관	전국 6개 본부세관 (서울,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유효기간	3년	3년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 접속 → UNI-PASS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작성 → 한-EU FTA 품목별원산지 가인증 선택 → 자료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 ② 방 문 : 신청서류 구비하여 대구본부세관 방문

• 신청서류 (방문신청시)

- ①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 ②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5개 이내)
- ③ 원산지소명서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

1)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포괄)확인서 확인

* 단,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④ 기타 서류

- (전산시스템 보유 시) 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매뉴얼

- (전산시스템 미보유 시)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

-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

• 문 의 : 대구본부세관 FTA 집행계 (☎ 664-5251~6, 664-5232)

<http://www.dcci.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십시오.

○ (3단계) 관련 자료의 보관

- 상품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송부
- 한국 수출자가 자료 및 제품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국내법으로 처벌됨을 유의
- 한국 수출자가 상대방 수입국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방문검증에 응하지 않으면 수출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통관상 불이익에 직면

○ (4단계)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기업 회계 시스템과 재료별 원산지 정보를 연계하여 원산지 확인, 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자료까지 일괄 관리
- 부품번호, 품명, HS번호, 가격, 소요량, 원산지, 공급자, C/O(원산지증명)번호, 수출입신고번호, 원산지기준 상호 연계

□ 수입업체

○ (1단계) 협정 발효국 및 관세혜택 확인

-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및 FTA별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를 활용할 경우 얻을 가능성이 있는 혜택을 분석

○ (2단계) 원산지 증빙 서류의 구비

-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및 직접 운송 입증서류를 확보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주체, 유효기간, 품명, 규격, 수량, 서명자 등 제반요건이 적합한지 확인
- 제3국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 단순경유 입증서류를 확보 : Through Bill of Landing²⁾, Transhipment Certificate of Origin³⁾ 등

○ (3단계)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및 관련 자료 보관

- 협정관세 : 통관 시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고 사후에 신청하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계약서, 운송서류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보관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됨

○ (4단계) 수입 계약 시 수출자의 책임을 계약서에 명문화

- 수입자는 제출하고자 하나, 수출자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자는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
- 수출자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공, 한국 세관의 조사 불응 등 수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수입자 손해에 대해 수출자의 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화

2) 운송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 기관, 즉 해운(海運), 육운(陸運), 공운(空運)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 계약을 맺는 절차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운송업자가 그 전 운송 구간(全運送區間)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 Through B/L의 경우, 해상 운송인은 육상 운송 수단을 수배하지만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님. Through B/L의 발행인은 해상 운송의 이행과 해상 구간의 손실만을 책임짐.

3)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 확인증서의 성격을 띠는 통관 서류를 말하며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한다.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적성국, 생산국 등을 판별하려는 목적이 있고, 양허세율 적용 등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 대구상공회의소 주최 FTA 교육 일정

구 분	내 용		대상	시기	비고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홈페이지(daegu.ftahub.go.kr)에 「FTA 인터넷 교육 강좌」 개설 홈페이지 접속 →FTA교육광장 →사이버동영상강좌 - FTA 개요 - FTA 통관실무 - FTA 원산지결정기준 -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신청요령 - FTA BUSINESS 활용 사례 - FTA 체결국별 시장현황 및 진출전략 등 		기업체 실무자, 대학생, 일반인 등	연 중	무료
오프라인	원산지 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기업체 실무자	연 10회	무료
		■ 모기업-협력사 원산지확인요령	기업체 실무자	연간 5회	무료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요령	기업체 실무자	5~6월 (총5회)	무료
	전문가양성	■ FTA 전문인력 양성과정	기업체 실무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6.18~7.9 (매주토요일 09:00~13:00)	무료
■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 교육		기업체 실무자, 대학생, 일반인 등	7. 6~7. 8 (3일간)	30만원 (수강료일 부지원검토 , 기업체에 한함)	

■ 설 명 회

내 용	대상	시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협정별 FTA 활용방안 설명회 (4회) - ASEAN, EU, 인도, 미국 등 	기업체 실무자, 유관기관 관계자	하반기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종별 FTA 활용방안 설명회 (4회) -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업체 실무자, 유관기관 관계자	하반기	무료
---	----------------------	-----	----

■ 전문가 컨설팅

구 분	내 용	대상	시기	기간	비고
온 라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홈페이지 「전문가 Q&A」 코너에 애로 및 궁금사항 질의/회신 [홈페이지 → 참여광장 → 전문가Q&A] 	지역기업	연중	-	무료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기업체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컨설팅료 지원 : 33만원(1건 기준) 	지역기업 50개사 정도	6월~	1일	무료

■ 문 의

- 전화 : 053-752-6531, 751-5765
- 팩스 : 053-751-3163
- E-mail : kant3321@hanmail.net
- 담당 : 박병복 과장

< 참 고 >

- 삼성경제연구소 (2011) 한-eu-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 지식경제용어사전, 지식경제부, 2010
- FTA 종합포털 <http://www.ftahub.go.kr/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FTA포털 <http://fta.customs.go.kr/>
 - 대구상공회의소 <http://www.dcci.or.kr>